

자동차 보험 가입과 사고처리 (II)

최종용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자 동차보험 중 피보험자와 가
장 이해관계가 밀접한 담보
종목이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이다. 이중 대인배상에
있어서 피보험차량(사고차량)이 책
입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손해배상금 지급시 책임보험으
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
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된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사
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무면허
이었을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앞에서 개
략적으로 설명한 자동차보험에 대
하여 구체적인 보상사례를 들어 살
펴보기로 하자.

Q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
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만 보
상받을 수 있는지요?

A :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사고
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동법 제
1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대인 또는 대
물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발
생 사실이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에
만 보상처리 및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사실을 신고해
야 합니다.

그러나 발생빈도가 많은 소액사
고까지 일일이 신고하는 불편을 덜
기 위해서, 1사고당 손해액이 10만
원 미만인 소액사고는 신고하지 않
아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Q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였을때 종합보
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한보상을
하여 준다는데, 이는 피해자가 요구
하는 보상금 전부를 보험회사가 보
상해 준다는 뜻인지요?

A : 종합보험의 무한보상제도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지는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제
도로써 무조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보상해 준다는 뜻은 아
닙니다.

보험회사는 일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치료비의 경우에는 치료기간 동안
의 수술, 투약, 검사 등에 소요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치
료중 사망했을 때는 사망할 때까지
의 실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합

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또 치료가 끝난뒤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됐을 때는 그동안의 실제 치료비와 후유장애보험금을 합한 금액을 사고발생 직전의 소득을 근거로 전액 보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상액수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배상액이 확정됐을 때는 보험회사가 법원판결금액까지 보상해 줍니다.

Q :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로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그 타인이란 자신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A : 종합보험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손사고, 차량손해의 네가지 손해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인사고로 인한 보상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동가친족 또는 보험가입자가사용을 허락해준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는 타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Q : 저희집 5살짜리 아이가 집앞 도로에서 놀다 자가용 승용차에 접촉되어 8주 부상을 입었습니다만 이제 완쾌되어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려는데 우리 아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과실만큼은 물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게 되나요?

A :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이 피해자 과실로 원인이 되었다면 피

해자가 잘못된 만큼 피해자가 책임지는 것이 손해배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6세 미만의 유아일 때는 그 잘못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노상에서 놀도록 방치한 부모의 잘못을 감안하여 일반도로에서는 10~30%, 간선도로에서는 20~40% 정도의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Q :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50세 남자입니다. 지난번 자가용 승용차가 가게로 침범하여 가게 일부와 진열된 상품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지요?

A :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운행 중의 사고로 다른 차량이나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는 대물대상으로서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립니다.

파손된 가게는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 상품,의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피해물과 동종의 대응품 가액을 보상하게 되고, 사고로 인해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이 파괴되어 휴업을 하는 기간동안의 영업손실은 간접손해로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영업손실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인정하게 됩니다.

Q : 자가용 자동차의 영업행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데 이웃사람이나 친척에게 호의,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줄 경우

는 어떻게 되는지요?

A : 자가용 자동차의 영업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가용의 사용실태 및 사고율과 영업용의 사용실태 및 사고율이 매우 다르고, 그에 따른보험료도 3~5배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웃이나 친척에게 호의,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행위는 영업행위로 볼 수 없고 통상의 자가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중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게 됩니다.

Q : 자동차 소유자가 호의로 친구 또는 행인을 동승시켜 운전 중 운전부주의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친구 또는 행인을 부상케 한 경우 어느정도 과실이 적용되는지요?

A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댓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타인을 탑승케 한 경우는 댓가를 받고 타인을 탑승케 한 경우와는 달리 호의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호의동승자에 대한 과실은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르나, 통상 동승자가 운전자의 승락없이 무단으로 동승한 경우나 강요동승한 경우에는 과실이 100%로 보상이 불가능하고, 동승자의 요청으로 운전자가 승락

한 경우는 20~5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된다.

Q :저는 얼마전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전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까지 넘겨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자동차를 종합보험과 함께 인도받았을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 일자가 86년 9월 이후일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보험회사로부터 권리양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배서승인 청구서(소정양식, 양도인의 인감날인)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즉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은 보험을 가입한 날 24시에 시작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 24시에 끝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즉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럴리스크(Moral Risk) 즉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시 시간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보험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시각부터 유효하며, 책임보험 개시일자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개시일자 0시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Q :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탔던 버스회사와 상대방 화물트럭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며 보상을 미루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원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자동차 충돌사고로 차내 승객이 다쳤을 경우 양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일방과실이면 버스측에서, 화물트럭의 일방과실이면 화물트럭측에서 전액 보상해야 하고 양차량의 과실이 각각 50%라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각각 50%씩 분담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보상을 서로 미루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버스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고 상대방 화물트럭측에 과실비율만큼 청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측은 일정 요금을 받고 태운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고, 승객이 다쳤을 때는 이를 우선해서 보상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Q : 충돌사고를 당해 자동차 수리를 의뢰중인 피해자입니다.

정비하고 있는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인데 이럴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대물담보에 가입돼 있고, 비사업용 자

동차가 파손되어 수리하는 기간중에 렌트카를 사용했을 때는 해당 차종 대여요금의 70%를 지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사용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단 그에 대한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까지,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10일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차량손해 담보종목에 보험가입한 후 약1개월 정도 지나서 자동차를 집앞에 세워두었다가 도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이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A : 피보험자가 소유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후 30일이 지난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 후 60일 만에 그 자동차를 찾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주고 그 자동차를 도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차량손해에 있어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 손해일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파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다음호에 계속)